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김창화 (서울지역팀 I 서울)

2017-11-10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기술성

서면평가는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어느 기관이든 기술성과 사업성으로 대별하여 평가할 것이나, 관점에 따라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수출이나 고용을 비중있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컬럼에서는 사업계획서의 기술성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지원사업이 공고되면 신청서 및 기업서류와 같이 접수해야하는 사업계획서는 공고되기 전에 가급적 전년도 또는 최근에 공고된 동일사업의 사업계획서의 구성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중기부의 과거 사업계획서는 개요, 준비현황/관련기술, 목표내용, 연구원/장비, 사업화 등이 한 부로 구성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현재는 '요약'과 '세부'로 세분화되어있다.

요약 양식은 5 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나, 세부 양식은 사업비를 포함하여 15 페이지 또는 25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일부 지원사업에서는 요약과 세부에 동일한 대분류가 반복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세부가 생략되면서 사업비가 별도로 된 경우도 있으며, 또는 페이지가 제한된 세부에 참여기업을 포함한 사업비 도표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여 작성에 애로가생길 수도 있으므로 계속 지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서의 성격은 산학연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학이나 일부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학연(學研)에서는 주로 기초적 연구 (Research)를 목표할 것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부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산연(産研)에서는 상업적 개발(Development)을 목표할 것이다. 당연히 본 내용은 중소기업의 상업적 개발 관점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 관련의 정부지원사업은 기술성 40%보다 사업성 60%로 배점하여 국가의 전략적 수출을 목표하며, 최근에는 고용에 대한 비중도 평가에 반영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기술성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사업화한다면 언젠가 사상누각이 될 것이니 서면평가든 대면평가든 기술성은 낮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검증 당할 수 있으므로 완성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제일 앞부분은 제품(또는 기술)에 대한 개요이다. 개발하려는 제품이 무엇인지 대표적 특징들을 서너 가지 기술하고,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사업계획서는 전체 내용에서 개발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리 디자인한 3D 제품 이미지, 초기 설계한 3D 투시도, 특허의 대표도, 작동계통도(P&ID) 등을 활용하여 개발대상이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제시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기술성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필요성, 독창성, 혁신성, 우월성, 차별성, 전망성, 파급성, 활용성, 대체성 등이 있을 것이다. 또는 기술의 위험도에 따라 기술의 우수성, 모방 용이성, 경쟁 또는 유사 기술의 수,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신제품 출현빈도, 생산 안정성 등도 있을 것이고, 권리에 따라 기술수명, 권리범위, 권리강도, 권리안정성 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종속적 관계일 수도 있고, 대등한 나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기여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의 사업계획서에서 기술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언하라면 단연 필요성과 차별성이고, 그 다음은 개발목표와 평가지표(성능지표)라 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신규성, 창의성, 독창성, 혁신성, 도전성 등을 더 중시하여 미래 전략적 소재발굴에 주력하고 싶은 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조직력 및 자금력과 더불어 높은 위험도(risk)를 고려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면한 현실적 수준에서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기술성의 핵심중 하나로 필요성은 고객이 이 제품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필요성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으면 개발 의지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즉,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사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소속기관에서 보직유지나 경쟁우위의 기구한 사연, 또는 사업비를 차용하려는 의도로 매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성이 명료하지 않으면 그 개발은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성은 절체절명하고 불요불급한 논리를 최대한 강력히 역설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제시한 필요성의 수준은 아래 <표1>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 <표1> 필요성의 수준

No.	필요성의 수준	전쟁 상황에서 제품	
1	그것이 없으면 고객이 죽을 것이다.	무기, 식량, 석유	
2	그것이 없으면 고객이 너무 불편할 것이다.	통신장비, 나침반, 의약품	
3	그런 것이 있으면 고객이 좋아할 것이다.	쌍안경, 침낭, 귀금속	
4	그런 것을 찾는 마니아 고객도 있을 것이다.	Stradivarius Violin	
(5)	사장님 지시로 월요일 아침까지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야 한다.		

사업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수요(needs)의 길목에 앉은 ①, ②항이 대성할 것이고, ③항은 위험(risk) 부담이 있을 것이며, 일부 온라인 카페의 마니아를 대상할 ④항은 기존업자의 사업확장에는 유용하겠으나 보편적 수요가 아닌 관계로 창업이라면 데스밸 리(death valley)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절실한 필요성을 어떻게 찾느냐고 반문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절실한 필요성도 없는 것을 개발하는 의도는 무엇이고, 또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버티겠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실제 사업계획서의 작성에서 필요성과 관련하여 잘못 제시될수 있는 오류들

을 아래 <표2>에서 살펴보자.

# <표2> 필요성과 거시환경요인

구 분		의료용 안마기	산업용 태양전지	
필요	2 성		탄소배출량의 증가 화석에너지의 고갈 신재생 에너지 수요의 증가	

위 <표2>에서 미래 고령화 사회가 오면 우리의 의료용 안마기가 유일한 대안이 될지, 탄소배출량 감소에 우리의 산업용 태양전지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즉, 미래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안마기는 휠체어, 매트, 욕조등 수많은 경쟁사, 경쟁제품, 경쟁기술들에게 시장을 1/n 분할해줘야 한다면 과연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아무리 증가할지라도 수치에 근거한 상업적 타당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양전지는 여전히 조력 풍력 등과 함께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객(소비자, 투자자, 평가위원 등)은 고령화 사회와 의료용 안마기가 매칭이 잘 안되어 사업계획서를 넘기면서 당신도 곧 망할 텐데 왜 개발하는지 안타까워할지도 모른다.

고객군 중에 37.1% 이상은 우리 안마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근거, 전세계 산업고객의 52.6%는 우리 태양전지 모듈을 채택할수밖에 없다는 추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2>의 플라톤(Plato)의 이데아(eidos)같은 거시적 환경요인들은 사실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의 미래사활에 관련될 것이므로 가급적 배제하고, 차라리 연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기현안 위주의 필요성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것이다.

즉, 필요성이라고 기재한 것들이 생사가 오가는 절절한 느낌도 없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장들이라면 이번에도 탈락은 당연할 것이니, 그렇게 정부지원사업은 늘 경쟁률이 높아 어렵다고 위안 삼으며 또 다음 기회를 학수고대할 것이다.

그러한 근거 또는 논리는 잠시 고민이나 조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기술, 제품, 시장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대하여 꾸준히 분석하다보면 더 풍부한 필요성과 차별성 논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의 선정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자 사업화 성공을 위해 어차피 투자해야 하는 노력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논리이다.

차별성이라 함은 당연히 기존 경쟁 제품이나 기술과 차별적 요소를 말한다. 필요성과 차별성의 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협의적으로는 고객에겐 대체로 필요성이고 경쟁사에겐 대체로 차별성이며, 광의적으로는 고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경쟁사에 대비한 기능성과 성능, 우리의 원가절감 등의 다양한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다.

차별성 제시를 위해 필요한 조사는 먼저 국내 경쟁사와 해외 선두주자들에 대한 조사인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대부분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발, 제조, 유통하는 제품들은 천지개벽 후 우리가 처음 만든 제품이라기보다 대부분 기존 제품의 복제품이나 개량품일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내 선두주자 여러 제조사와 해외 수 조원 매출하는 글로벌유통사 몇 개쯤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차별성도 필요성과 함께 제품의 경제적 수명이자 기업의 사활이므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기술성과 차별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발목표와 평가지표(성능지표)의 작성이다. 개발목표는 유형적 결과물로 개발 예정품과 함께 개발될 소모품 등을 제시하면 되고, 무형적 결과물로 지식재산권, 논문, 공인시험성적서, 기타 시험보고서 등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또는 개별적인 기술만으로도 상업적 가치가 있거나 상당한 난관을 돌파하여 성과로 분류 가능할 정도라면 개발목표에 언급해도 될 것이다.

이때 개발 예정품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은데, 사업계획서 제일 앞부분에서 제품개요를 위한 개념도, 특허분석 부분에서 출원한 특허의 대표도를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완성된 개발품을 대변할 수 있는 3D 투시도 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만일 인력이나 비용 문제로 제시가 곤란하다면 연필로 대충 그려서 제시하더라도 의사전달에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평가지표는 결과물에 대한 수행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체크포인트인데, 반드시 수치로 표현 가능한 요소 중에서 대표적 규격과 핵심적 성능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언하면 된다. 그런데 간혹 일부 지원자들의 경우 개발예정품의 길이와 무게 등의 외형적 수치만 선언하고 제품 고유의 핵심성능 항목을 누락시킬 경우, 결과물의 완성도가 평가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에 심각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향후 대면평가의 발표자료에 보완한 다음, 수정 또는 추가한 항목을 반드시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만일 설명하지 않으면 '왜 임의변경 했는가?'라면서 부정적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평가항목으로 어떤 것을 선언해야 할지에 대하여 이미 전군에 보급되어 있을 K2 소총을 우리가 개발을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경쟁품의 사양정보와 비교하면서 아래 <표3>의 요소들을 검토해보자.

## <표3> 각국 소총의 비교

구 분	단 위	Colt (USA)		ADD (Korea)
ТЕ		M16A1	M4A1 Carbine	개발예정품 (K2)
① 길이	mm	986	838	970
② 개머리판 접었을 때	mm	-	757	730
③ 총열 길이	mm	508	368	465
④ 중량	kg	2.89	2.68	3.26
⑤ 조준기	-	기계식	철 가늠좌/가늠쇠	야광 기계식
⑥ 총탄 직경	mm	5.56 (NATO)	5.56 (NATO)	5.56 (NATO)
⑦ 총열	인치/회 전	12	7.0	7.3
⑧ 연사 속도	발/초	750~900	700~950	700~750
⑨ 유효 사거리	m	460	360	600
⑩ 최대 사거리	m	3,600	1,460	2,400

## \*\* 출처: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

소총이라면 아무래도 휴대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① 길이와 ④ 중량의 외형적 치수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 군은 미군과 합동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⑥ 5.56 mm NATO탄을 쓴다는 국제규격 준수도 중요할 것이고, ⑧ 연사속도와 ⑨ 유효사거리는 개발예정품의 핵심적 성능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일 것이다.

이때 평가항목의 수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1년의 단기과제는 5개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장기과제는 그 이상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3개도 힘들 경우도 있고 10개가 넘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항목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일부 항목이 미달성되면 '실패' 판정으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다시 환급해야 할 위험마저 생긴다. 그래서 개발의 특성상 항목이 너무 많을 경우, 비슷한 항목들에 대하여 광의적으로 묶고 세부내용에 '~ 시험 등'의 대표적 시험 위주로 열거한다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어쨌든 평가항목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규격과 핵심성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략 5개 내외에서 선정하면될 것이다.

<표3>의 대부분 항목은 정량적 수치로 표현 가능하지만, ⑤항은 수치로 표현 불가한 정성적 항목이다. 그래서 간혹 개발 예정품의 특성상 수치화 가능한 항목이 적을 경우에는 정성적 항목도 일부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반면에 지식재산권, 공인시험성 적서, 참여/위탁기관 보고서 등은 개발을 수행한다면 의례히 산출되어야 하는 수행기업들의 공통적 결과물이므로 그다지 적절한 편은 아니다.

<표3>의 내용 중에서 선언한 5개 평가항목 외에도 점사속도, 탄창규격, 가스작동방식 등은 시대적 관점이나 경쟁적 상황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할 것이며, 그 외에 진흙탕/모래 침지후 사격, 극지 영하 또는 열대 고온에서 작동성, 소총분해 속도 등의 항목은 중소기업의 단기과제보다 글로벌 경쟁력의 장기 대형과제에 적절한 평가항목이 될 것이다.

평가지표에 시험규격 또는 시험기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규격에 공인시험성적서라고 입력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험기관에 KS 0000 등으로 입력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때 시험규격은 시험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의미하며, 그 예로서 해당 제품과 관련되는 법, 고시/지침/가이드라인, KS 규격 등이 해당될 수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KS 규격은 우리 대한민국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5~10년 전에 공개된 ISO 등의 한글화 수준이 많으며, 따라서 향후 영문 시험성적서를 추가 발급하여 제시할 경우 수출에 시비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진출도 고려한다면 우리 표준보다 ISO, IEC, UL, US FDA, US EPA 등의 글로벌 규격으로 공인시험이 바람직하며, 향후 해외바이어 또는 영내대리인(유럽 CE)들과 별다른 마찰 없이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성적서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미리 국제규격으로 연습해 둔다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시험기관을 표기해야 할 경우 KTL, KTR, KTC, KTR 등의 공인시험기관을 입력하면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잘 인지된 기관들이 므로 약자를 쓰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기관들은 한글명을 병행 표기하는 것도 좋다. 이 때 자체평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평가 등은 객관성 문제로 선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배제해야한다.

그런데 공인시험이 가능할 줄 생각했던 항목이 막상 의뢰하려니 해당시험이 불가한 난감한 상황을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것이다. 그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지원사업과 무관한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제3자에 의해 시험한다면 자체평가보다는 객관성 시비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때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보고서의 발행은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의 의견서는 개인 자격이므로 객관성을 대변할 수 없고, 대학내 연구주체인 부설연구소 등에서 기관명-기관장명-기관직인, 문서번호-발행일자, 작성자 등의 표지가 포함된 공식문서를 확보해야 인정받기 쉽다.

## <표4> 공인시험과 관련된 기관

기관 분류		기관 예시	내 용	
수 행 기 관	주관기관	지원사업 주최기관	자체평가는 대부분 불인정	
	참여기관	지원사업 참여기관	자체평가는 대부분 불인정	
	위탁기관	지원사업 보조기관	아주 특별한 상황만 인정	
공인시험기관		KTL, KTR, KTC, KCL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인시험기관	
제 3 기 관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공인시험기관이 아닌 연구소	
	대학 부설연구소		학과장 직책은 학사주체이므로 곤란	
	민간시험기관	시험분석 전문회사	다양한 시험분석 전문회사가 전국에 분포	

∞ 상기 내용은 이해를 위하여 임의로 분류하였으므로 분류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음.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근거하여 임상시험기관과 비임상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인시험기관 확보가 곤란하면 식약처 지정 비임상시험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기관도 확인하여 의뢰하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공인시험기관마다 가능한 시험항목을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진행 중이고, 매년 평가에서 자격 미달할 경우 더 이상 해당항목의 시험자격이 말소되며, 따라서 공인시험 항목도 매년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식품 분야의 경우 개발예정품의 관능적 요소가 절대적이므로 맛, 조직감, 색상, 외관 등의 관능검사(sensory test)를 평가지표에 가급적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대학 등 제3의 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면 될 것이다. 평가항목 선정도 힘들고 공인시험도 곤란할 경우, 해당고객 30~100명을 소집하여 고객 체험의견을 종합하는 gang survey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될 수도 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경우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 또는 상호간의 개인정보가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발 결과물이 너무 크거나 무거워 이동이 곤란할 경우, 우리에게 방문해서 진행하는 출장 공인시험 항목도 있으니 해당기관에 상의하면 된다.

사업성이 기술성에 근거한다면 기술성의 핵심은 특허이다. 즉 특허의 권리범위, 권리강도, 권리안전성, 경제적수명 등은 해당 아이템이 얼마나 번창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연간 수십억원 수준의 매출로 계속 만족 하겠다면 특허뿐 아니라 차별성이나 기능성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지도 모르나, 투자유치 후속으로 주식공개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까지 목표한다면 다수의 특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출원 또는 등록특허가 있다면 핵심적 이론의 권리범위와 기술수명 등을 제시하여 우리 기술의 사업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역설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지난 호에서 소개한 특허 지원사업으로 지식재산전략원(지재원)의 IP R&D 사업을 수행했었다면 사업계획서에 특허동향과 기술분석 자료들을 적절히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청 KIPRIS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USPTO)-유럽 (EPO)-일본(JPO) 삼극특허(Triad Patent Families) 위주로 분석하면 된다. 이때 검색 연산자들을 해당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교육으로 미리 학습하고, 다양한 연산자들을 활용하여 검색-수집-분석한다면, 거액의 WIPS 분석보고서 또는 변리사만큼 전문성은 아닐지라도 나름 좋은 특허동향을 분석하고 기술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성 분석에서 특허와 더불어 논문도 중요하다. 논문은 주로 국제학술지 위주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급을 권하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 학술보고의 논문(paper)보다 리뷰(review)를 확보하면 더 좋을 것이나, 학술대회의 포스터(poster) 발표는 객관적 심사 없이 일방적 발표자료이므로 배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대상이 신기술 성향일 것이므로 아직 공개정보가 많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리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앞에서 배제를 권했던 포스터뿐 아니라 국내학술지, 관련단체 전문잡지나 일간지 사설 등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가공하는 것이 좋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의 업무분장을 보면 주관기관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계의 개발에서 디자인은 외주, 설계도 외주, 금형도 외주, PCB 외주, 구동 SW도 외주, 전장박스 제작 등 모든 것을 외주로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앞에 열거한 여러 업무들이 대체도 외주처리가 일반적이지만, 간혹 조직력의 한계를 핑계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처리 한다고 버틴다면, 도대체 주관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게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기관이 핵심적인 개발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설계, 조립, 시험 등 최소한의 핵심업무는 내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핵심인력이 없을 경우 관련의 경력자를 이미 섭외하여 신규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신규인력채용계획서(지정양식)를 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인력은 개발에 참여할 실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으로 볼 때 당연히 특성화고교를 포함한 이공계열 출신이 될 것이다. 반면에 정부지원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수반되는 개발들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인문계열 출신은 개발과 관련될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조직력이 약할 것이며, 그래서 인문계열 인력이 개발 참여를 인정받고 싶을 경우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등의 어떤 증빙자료라도 제시해보면 도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사업비의 인건비 편성에서 신규인력 기준에 자주 문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직계존비속은 객관적 전문성을 증빙할 근거가 없다면 신규인력뿐 아니라 기존인력으로 참여율 산정도 불가할 것이다.

연구시설은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석 및 가공기기와 시설들을 도표에 입력하면 된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기를 도입하면 시설이력-입고검수-정기점검 등의 업무가 이미 시스템화 되어있어 도표 작성에 부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후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을 경우, 각 제품들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사양, 구입일, 가격 등에 대한 시설자료는 향후 R&D 사업뿐 아니라 지역 비R&D 사업, 타기관 요청,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에도 계속 요구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예시는 중기부 산하 기정원의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정보마당-공지사항-No.2502)에서도 제공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SBC)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온라인 강의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공식 거론이 어려운 내용들에 조금이라도 보완될까 하는 차원으로 본 컬럼을 작성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처음 경험하거나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어디 물을 곳도 없으니 밤을 지새워도 완성도의 한계에 대한 노파심도 있다. 그래서 본 내용들은 ① 서면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비를 편성할 때, ② 현장평가를 준비할 때, ③ 대면 발표자료 만들 때마다 각각 참고 될 수 있도록 컬럼을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각 시기마다 해당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기술성 부분에 포함될 경쟁사의 기술, 제품, 동향, 시장 등의 분석은 다음 컬럼(제4회)의 '사업계획서의 사업성'편과 중복되는 성향이 있어 생략하고, 다음 컬럼에서는 사업성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동향 파악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포털도 같이 소개하고 자 한다.

[참고] 본 내용의 수치와 기준 등은 정부의 정책 또는 부처별 전략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